

베트남의 회계와 세무

January 22, 201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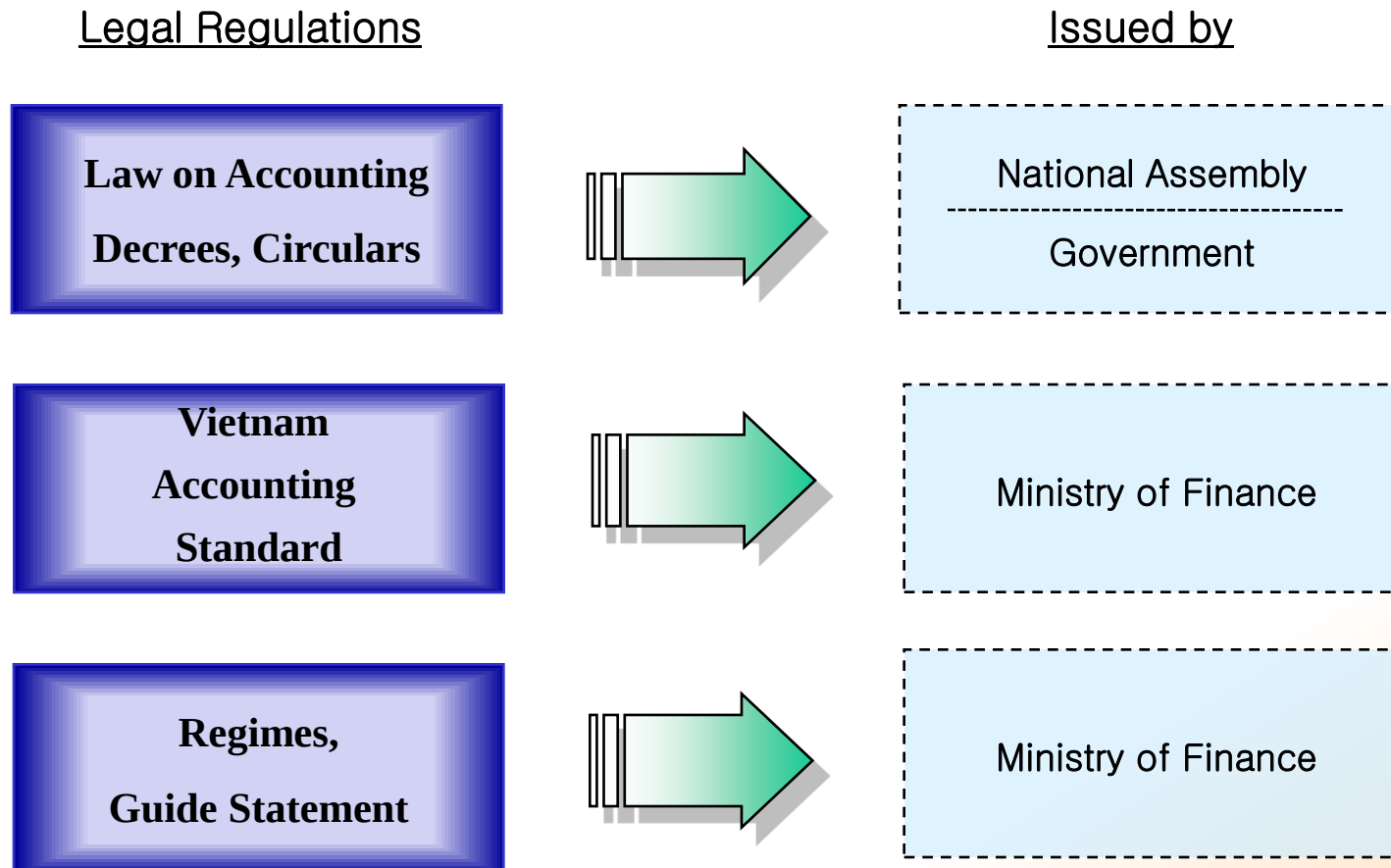
- I. 베트남의 회계제도
 - 1. 베트남 회계제도의 특징

- II. 베트남의 주요 세제
 - 1. 주요 세목의 규정
 - 2. 법인세(CIT)
 - 3. 개인소득세(PIT)
 - 4. 부가가치세(VAT)

I. 베트남의 회계제도

1. 베트남 회계제도의 특징

◆ Regulation on Vietnam Accounting System



I. 베트남의 회계제도

1. 베트남 회계제도의 특징

- ◆ Law No. 03/2003/QH11(17 June, 2003)
- ◆ The Highest-ranking legal document
- ◆ Comprises of 7 chapters
 - CH I : General Provisions
 - CH II : Contents of Accounting Work
 - CH III : Organization of Accounting Division & Accounting Personnel
 - CH IV : Professional Accounting Practice
 - CH V : State Administration of Accounting
 - CH VI : Reward and Dealing with Breaches
 - CH VII : Implementing Provisions

I. 베트남의 회계제도

1. 베트남 회계제도의 특징

◆ Law No. 03/2003/QH11(17 June, 2003)

▪ CH I : General Provisions

- ① 적용 : 정부 및 정부출연기관, 비영리법인 및 기구, 모든 기업의 본점, 지점 및 사무소, 조합, 개인사업자,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자에 적용함.
- ② 회계의 목적(기능) : 회계정보의 수집, 정리, 기록. 기록된 정보의 Check & Monitor. 경제적 의사결정이나, 관리적 목적을 위한 회계정보의 분석. 법적으로 요구되는 회계정보의 제공(보고)
- ③ 회계정보에 요구되는 질적 속성 : 완전성(충분성), 적시성, 정확성과 이해가능성, 신뢰성(실재성), 계속성, 비교가능성
- ④ 회계공준(원칙) : 역사적 원가주의, 계속기업, 정확한 기간의 객관적이고 완전하며 실제적인 사건의 반영, (법률에 입각한)완전공시, 보수주의
- ⑤ 화폐단위 : 장부표시는 베트남 동화(VND)가 원칙(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관련세무당국에 신고하고 미달러화(USD)로 재무제표 작성가능)
- ⑥ 베트남어 필수 기재(영문 등 병기 가능)
- ⑦ 회계기간 : 월, 분기, 년(12개월, 설립 및 청산하는 해의 회계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총 회계기간이 15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·후 회계기간과 합할 수 있음.)

I. 베트남의 회계제도

1. 베트남 회계제도의 특징

◆ Law No. 03/2003/QH11(17 June, 2003)

▪ CH II : Contents of accounting work

① 회계전표

✓ 필요적 기재사항 - 제목, 일련번호, 작성일, 상호 및 주소, 작성자, 거래내역, 수량·단가 및 거래금액(숫자 및 문자), 작성 및 승인자의 서명날인

✓ 전자전표(Electric Voucher)의 허용

② Chart of Accounts and general Ledger(총계정원장)

✓ Opening

✓ Posting

✓ Correcting(Rectifying, Negative, Additional Recognition만 인정, 한국과 다름 - 수정분개시 반대분개 불가)

✓ Closing

③ Financial Statements(영리법인)

✓ Balance sheet, Income statement, Cash flow statement and Note to FS

✓ 회계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출(외국인 투자법인은 법정 외부감사 대상임)

✓ 서류의 보관 : 회계전표, 원장, 재무제표(10년), 계약서, 주문서 등(5년)

I. 베트남의 회계제도

1. 베트남 회계제도의 특징

◆ Law No. 03/2003/QH11(17 June, 2003)

- CH III : Organization of Accounting Division and Accounting personnel
 - ① 모든 기업은 회계를 담당할 부서를 조직하고 회계를 담당할 개인 또는 조직을 임명해야 함.
 - ② 모든 기업은 Chief Accountant(경리장) 또는 경리장을 대신하여 회계사무를 책임질 사람을 임명해야 함.
 - ③ 경리장의 자격 - 2년(대졸), 3년(초대졸) 경력 후 CA course 수료 후 시험
- CH IV : Professional Accounting Practice
 - ① Certificate for Professional accounting Practice - 학사학위 소지자로 5년 이상의 경력과 시험
 - ②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경우 2인 이상의 필요.

I. 베트남의 회계제도

1. 베트남 회계제도의 특징

◆ Other Regulation

- ◆ Decree No. 129/2004/ND-CP
- ◆ Decree No. 185/2004/ND-CP(11 November, 2004)
- ◆ Circular No. 120/2004/TT-BTC(15 December, 2004)
- ◆ Circular No. 122/2004/TT-BTC(22 December, 2004)
- ◆ Circular 228/2009, 179/2012, 180/2012 등 그 외 다수 Circular, Decision
- ◆ The twenty-six issued Vietnamese Accounting Standard
 - Decision No. 149/2001/QD-BTC(4 Accounting Standards)
 - Decision No. 165/2002/QD-BTC(6 Accounting Standards)
 - Decision No. 234/2003/QD-BTC(6 Accounting Standards)
 - Decision No. 12/2005/QD-BTC(6 Accounting Standards)
 - Decision No. 100/2005/QD-BTC(4 Accounting Standards)

I. 베트남의 회계제도

1. 베트남 회계제도의 특징

◆ VAS(Vietnamese Accounting Standard)의 특징

- Base on IAS(IFRS) issued by IASC(IASB)
- Be in harmony with the development of Vietnam's market
- Focus on historical cost principle
- Lack of some standards applying in developed economics

IAS 19, 20, 26, 29, 32, 36, 39, 41(종업원 급여, 정부보조금, 퇴직급여,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, 금융상품: 표시, 자산손상, 금융상품; 인식과측정, 농림어업)

- Contents of 26VAS
- “Accounting standards comprise basic accounting principles and methods for posting entries in accounting book and for preparing financial reports”(Article 8, Law on accounting)

I. 베트남의 회계제도

1. 베트남 회계제도의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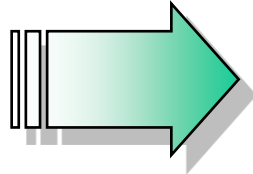
-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, 자본변동표 – 주요재무제표에서 제외, 자본거래의 내용이 단순함
- 고정자산(유형, 무형) 계상금액의 최소단위 규정 – 30,000,000 VND
- 외화환산 – 환율: 거래은행의 매입율 적용(각 기업마다 다를 수 있음), 환산이익과 환산손실의 상계 후 표시
- 투자자산의 평가 – 원가법(개별재무제표에서 원가법 적용)
- 개업전비용의 자산 계상가능(Long-term Prepaid Expenses – 장기선급비용)
- 계정과목 코드의 부여로 표준화된 회계처리 가능하나 유연성이 떨어져 각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움
- 공시제도 미흡, 외국인투자법인의 법정회계감사 시행
- 신설법인의 건설기간중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산손익의 자본조정 계상 후 상각

국제회계기준	베트남 회계기준
✓거래의 실질중심 원칙주의 ✓공정가치 중심 ✓연결재무제표 중심	✓규정중심(회계정보 생산자의 재량이 없음) ✓역사적 원가 중심 ✓개별재무제표 중심

II. 베트남 주요 세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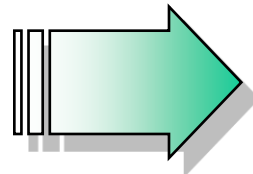
1. 주요 세목의 규정

CORPORATE INCOME TAX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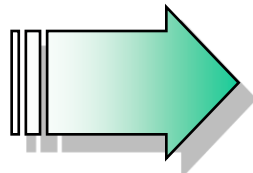
- Law on CIT No. 14/2008/QH12
일부수정 No. 32/2013/QH13(2014년 적용)
- Decree No. 218/2013/ND-CP
- Circular No. 123/2012 /TT-BTC
- 그 외 다수

PERSONAL INCOME TAX



- Law on PIT No. 04/2007/QH12
일부수정 No. 26/2012/QH13
- Decree No. 65/2013/ND-CP
- Circular No. 111/2013/TT-BTC(15 August, 2013)
- 그 외 다수

VALUE ADDED TAX



- Law on VAT No. 13/2008/QH12
일부수정 No. 31/2013/QH13
- Decree No. 209/2013/ND-CP(18 December, 2013)
- Circular No. 06/2012/TT-BTC
일부수정 No. 65/2013/TT-BTC
- 그 외 다수

II. 베트남 세제의 개요

2. Corporate Income Tax(법인세)

1) 총칙(General Provision)

- 납세의무자 :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판매로 법에 정하는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단체(조직)
 - a. 베트남 법(기업법, 투자법, ...협동조합법)에 의하여 설립된 모든 내국법인, 협동조합
 - b. 외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(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의 유·무를 불문함)
 - c. 재화의 생산 및 판매, 용역의 제공으로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비영리 (비)공익 단체
 - d. 기타 제조 및 판매 활동으로 과세소득이 있는 단체
- 위 내용을 도식화 하면
 - * 내국법인 - 영리 : 국내 및 해외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
 - 비영리 : 국내 수익사업소득
 - * 외국법인 - 고정사업장 유 - 국내원천소득 및 외국에서 발생한 고정사업장 관련 소득
 - 고정사업장 무 - 국내(베트남 내)원천소득
- 고정사업장(개정)
 - * 아래와 같은 시설을 두고 베트남에서 생산 및 판매의 일부 및 전부를 수행하는 경우
 - a. 지점, 관리사무소, 공장, 운송수단, 광산, 유전 등 천연자원 개발 Site
 - b. 건설현장(construction, installation and assembly work)
 - c. 자기 직원 또는 단체 및 개인을 이용하여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
 - d. 외국법인의 대리점
 - e.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, 정기적으로 상품을 제공, 용역을 공급하는 대표사무소

II. 베트남 세제의 개요

2. Corporate Income Tax(법인세)

1) 총칙(General Provision)

- Taxable Income
 - a. 생산, 판매, 서비스의 제공 등 주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 - b. 기타소득: 자본 또는 지분, 부동산, Project 또는 개발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, 자산 및 지적재산권의 임대 및 양도에 의한 소득, 예금 및 대출이자, 외환거래 이익, 상각채권추심이익, 채무면제이익, 전기누락소득, 국외사업으로 인한 소득(개정)
- 비과세소득: 다음과 같은 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음
 - a. 영농, 축산, 양식, 제염업 협동조합 소득, 농업, 임업, 어업, 염전업 소득으로 사회-경제적 (특별)취약 지역에서 발생하는 협동조합 소득 및 기업소득으로 사회-경제적 특별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, 축산, 양식업 소득(개정)
 - b. 농업기술사업 소득
 - c.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시험생산기간, 베트남에 최초 적용되는 신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소득
 - d. 연평균 고용인 20인 이상으로 장애인, HIV감염자, 치료중독자의 고용비율이 30% 이상인 기업(금융업과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)(개정)
 - e. 기타: 장애인 등의 직업교육사업, 국내기업 투자에 대한 배당소득
 - f. 탄소배출권 거래소득(신설)
 - g. 사회-경제적 특별취약지역의 개인 또는 기업에 이전되는 기술이전 소득(신설)

II. 베트남 세제의 개요

2. Corporate Income Tax(법인세)

2) 산출세액의 계산방법 및 근거(Method and base of tax calculation)

- 산출세액 = (과세표준 - 기술개발준비금) * 법인세율
 - 과세표준 = 과세소득 - 비과세소득 - 이월결손금(5년간 공제)
 - 과세소득 = 사업수입금액 - 공제가능 비용 + 기타소득
 - a. 사업수입금액: 주 영업 매출액 - (매출할인, 수량할인, 매출환입)
 - b. 과세기간: 과세기간은 회계법을 준용하여 1역년(1/1 ~ 12/31) 또는 회사가 정하는 1 fiscal year로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. 최초 회계연도 및 최종 회계연도가 90일 미만일 경우 총 과세기간이 15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과세기간 또는 전(前) 과세기간에 합할 수 있음
 - c. 기타소득의 경우 법인이 향유할 수 있는 세제혜택의 적용이 배제됨.
 - d.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분리하여 과세함. 부동산 양도에서 발생한 손실은 동일한 과세기간의 주사업의 이익과 상계 가능함(개정)
 - e. 기술개발준비금: 과세표준의 10%를 한도로 과학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5년 내에 70% 이상을 목적 사용하여야 함. 미사용 및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동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및 이자를 납부해야 함.
-
- 공제가능 비용
 - a.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으며(include 경비, 보안 등)
 - b. Invoice, Voucher 등 법정하는 충분한 증빙이 있을 것(2천만동 이상의 경우 현금지급 불가)
 - c. 예외 ;개인 및 가내수공업자 등과 거래하는 농, 수, 임산물 등, 종업원을 위한 HIV 예방 및 치료 비용 (이 경우 지급증빙 및 구매리스트 그리고 책임자의 확인이 필요함)

II. 베트남 세제의 개요

2. Corporate Income Tax(법인세)

2) 산출세액의 계산방법 및 근거(Method and base of tax calculation)

- 공제불가능 비용(손금불산입)
 - a. 위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하는 경우(예외: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물리적 사건으로 인한 손실로 법령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)
 - b. 벌금 및 가산세
 - c. 타인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
 - d. 해외법인에 부과된 관리비용으로 매출액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부분
 - e. 대손충당금, 재고자산평가충당금 등 충당금으로서 법률상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
(대손충당금 한도 - 6개월 초과 30%, 1년 초과 50%, 2년 초과 70%, 3년 초과 100%)
 - f.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아닌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기준이자율(현행 9%)의 150%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지급이자
 - g. 차입금이자 중 정관자본금의 미납입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
 - h. 감가상각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
 - ✓ 회사의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(예외; 기숙사, 야간조를 위한 휴게실, 식당, 양호실, 교육실, locker room 등은 가능)
 - ✓ 적격한 서류 및 증빙이 없는 자산
 - ✓ 회사의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
 - ✓ 9인승이하 승용차로써 취득원가 16억동 이상의 감가상각비
 - ✓ 재무부가 규정하는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초과하는 금액(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)

II. 베트남 세제의 개요

2. Corporate Income Tax(법인세)

2) 산출세액의 계산방법 및 근거(Method and base of tax calculation)

- 공제불가능 비용(손금불산입) – 계속
 - i. 선급비용 중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부분
 - j. 개인기업 대표자의 급여, 투자자 중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자에 지급된 급여, 급여 및 상여 중 노동계약, 단체협약에 정하지 않은 부분, 급여 관련 지급증빙 등이 불비한 부분
 - k. 광고비, 마케팅비, 접대비 등(이하 “판매비”) 한도초과액
판매비가 판매비를 제외한 모든 공제가능비용(유통업의 경우 상품매출원가 제외)의 15%를 초과하는 금액(현행 10% 한도, 사업개시 3년 이내 법인은 15%)(개정)
 - l. 기부금(예외: 교육, 의료, 과학연구, 자연재해 구호 등 법정기부금 등)
 - m. 연 5백만동을 초과하는 피복비(현금지급 가능)
 - n. 혁신 및 업무개선 장려금 중 규정을 초과하는 부분
 - o. 원재료, 연료 및 에너지 등의 초과 사용분(Reasonable consumption norm의 구비)
 - p. 여비(Per diem) 한도초과분(1일 30만동 기준)
 - q. 현금 및 예금, 매출채권 등 자산과목의 환산에서 발생한 외화환산(손)익은 각각 손금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함(차입금, 외상매입금 등의 부채과목의 환산으로 인한 외화환산손익은 손금 및 익금 인정)

II. 베트남 세제의 개요

2. Corporate Income Tax(법인세)

2) 산출세액의 계산방법 및 근거(Method and base of tax calculation)

- 세율
 - a. 2013년 법인세율 25%(단일세율)
 - b. 2014년부터 22%, 2016년 이후 20%
 - c. 중소기업(직전연도 매출액이 2백억동을 초과하지 않음)의 경우 2013년 7월부터 20%의 세율을 적용
 - d. 석유, 가스 등 천연자원의 개발사업은 사업에 따라 32% ~ 50%의 법인세율 적용

3) 법인세 우대정책(CIT Incentives)

- 10%세율 적용 - 15년 동안(개정)
 - a. 신규설립법인으로 사회-경제적 특별낙후지역, Economic Zone, Hi-tech Park에 설립하는 법인
 - b. 신규설립법인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하이테크 기술개발 및 과학 연구 사업, 이의 인큐베이팅 사업, 법률에 정하는 정부의 주요인프라 개발사업, 초경량 건자재 및 정밀 원재료 생산, 신재생 에너지 사업, 바이오테크놀로지 개발 및 환경보호사업
 - c. 하이테크놀로지 법에 의한 하이테크 기업, 하이테크 농업기업
 - d. 제조업을 영위하는 신규설립법인으로(특소세가 부과되는 제품생산 및 광산은 제외) 아래에 해당
 - ✓ 자본금 6조동 이상(설립 후 3년내) and 매출액 10조동 이상(매출 발생 후 3년내)
 - ✓ 자본금 6조동 이상(설립 후 3년내) and 종업원 3천명 이상(설립 후 3년내)

II. 베트남 세제의 개요

2. Corporate Income Tax(법인세)

3) 법인세 우대정책(CIT Incentives)

- 10%세율 적용 – 전 사업기간(개정)
 - a. 교육훈련, 직업교육, 보건, 문화, 스포츠 환경 사업으로 사회정책에 준하는 사업
 - b. 주택법 53조에 정하는 주택의 판매 및 리스, 구매 후 리스 사업
 - c. 출판법에 따른 출판물 및 언론법에 따른 신문사업
 - d. 사회-경제적 낙후지역의 농업, 임업, 양식업 소득, 식물, 동물 종의 교배, 농산물, 수산물과 식품의 보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
 - e. 농업, 임업, 어업, 제염 협동조합으로 비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
- 20%세율 적용 – 10년 동안(개정)
 - a. 신규설립법인으로 사회-경제적 낙후지역에 설립하는 법인
 - b. 신규설립법인으로 고품질 스틸 생산, 에너지 절약제품 생산, 농림어업용 기계, 관개용 기계 생산 등
(이 규정은 2016년 1월 이후 17%의 법인세율 적용)
- 20%세율 적용(2016년 이후 17%)
 - a. 서민신용기금 및 Microfinance Institution
- 특별한 세금우대 유인이 필요한 대규모의 하이테크 프로젝트의 경우 15년의 한도 내에서 세제혜택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.

II. 베트남 세제의 개요

2. Corporate Income Tax(법인세)

3) 법인세 우대정책(CIT Incentives)

- 세액 공제 및 감면 기간(개정)
 - a. 10%의 세율이 15년 동안 적용되는 사업 중 a와 c 및 10%의 세율이 계속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 4년간 면제하고 9년간 50%를 감면
 - b. 20%의 세율이 10년 동안 적용되는 사업과 공단에 신규 설립하는(사회-경제적 우수지역의 경우는 제외) 법인의 경우 2년간 면제하고 4년간 50% 감면
 - c. 기간의 기산
 - ✓ 법인세 면제기간의 기산은 법인의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기산함. 그러나 설립 후 3년간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 매출 발생 후 4년째부터 기산함.
 - ✓ 하이테크 법인의 경우 사업 첫해부터 기산함.
- 업종, 지역에 따른 법인세 우대혜택을 추가 투자분에 대하여도 적용하며, 아래의 조건 중 하나이상을 만족할 경우 새로운 투자로 보고 우대혜택을 새롭게 적용하던지 기존 투자의 혜택 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혜택을 적용할 수 있음-선택사항(개정)
 - a. 200억동 이상의 추가 고정자산 투자(사회-경제적 (특별) 낙후지역의 경우 100억동)
 - b. 현재 고정자산 취득원가 대비 20%의 추가투자
 - c. 현재 생산능력의 20% 이상의 생산능력 증가 투자
- 기타 감면
 - a. 여성고용 장려(제조, 건설, 운송업) - 추가 사용비용 해당액에 대한 세액감면
 - b. 정신지체아 고용 장려 - 추가 사용비용 해당액에 대한 세액감면
 - c. 사회-경제적 낙후지역으로의 기술이전 소득 50% 감면(신설)

II. 베트남 세제의 개요

3. Personal Income Tax(소득세)

1) 총칙(General Provision)

- 납세의무자 : 거주자로서 베트남 역내 및 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자연인과 비거주자로서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자연인
 - a. 거주자: 1년중 183일 이상을 베트남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183일을 거주하지 않아도 주거법에 따라 주소지로 등록된 주소가 있거나 주택법에 따라 183을 이상의 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하여 항구적인 거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b. 비거주자: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
- Taxable Income(과세소득)
 - a. 사업소득
 - ✓ 제조, 판매 및 서비스업 소득으로 특히 농림어업, 양식 및 염전소득으로 아래의 면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
 - ✓ 자격을 보유하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전문가 용역
 - b. 급여소득
 - ✓ 급여, 임금으로 화폐 또는 비화폐의 형태로 제공받는 것
 - ✓ 수당 및 보조금(제외; 사회봉사, 군인의 방위수당, 위험지역이나 위험물 취급 수당, 노동법에 규정된 산재수당, 임신 및 육아수당, 실업수당, 외국인의 베트남 근무를 위한 주거이전을 위하여 지급되는 1회의 수당 등)
 - ✓ 정형화된 커미션, 로열티 등
 - ✓ 이사회, 주주총회 등 경영자모임에 참석하고 받는 보수

II. 베트남 세제의 개요

3. Personal Income Tax(소득세)

1) 총칙(General Provision)

- Taxable Income(과세소득) - 계속
 - ✓ 고용인으로부터 제공받는 금전적, 비금전적 편익
 - 렌트하우스 및 전기, 수도료 등의 부대사용료
 - ★ 주택임차료의 급여가산 -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의 주택을 임차해줄 경우 임차료와 급여의 15% 중 작은 금액을 근로자의 소득계산시에 가산함
 - 사용자가 종업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생명보험, 퇴직보험 등 강제적 보험이 아닌 보험료
 - 스포츠, 병원 등의 회원권 및 사용료
 - 기타 법령에 규정하는 편익
 - ✓ 보너스와 상금(예외: 포상법에 따른 상금, 베트남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 대회 포상금, 기술혁신 포상금, 불법행위 적발 및 신고 보상금)
 - ✓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음
 - 위험한 질병에 대한 종업원과 그 가족의 검사 및 치료비(개정)
 - 정부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가 지급받는 규정상의 교통비
 - 연 1회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방문 항공료
 -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베트남내 학비, 국외근로 베트남인 자녀의 외국학교 학비

II. 베트남 세제의 개요

3. Personal Income Tax(소득세)

1) 총칙(General Provision)

- Taxable Income(과세소득) - 계속
 - c. 자본투자에 따른 소득
 - ✓ 이자, 배당금
 - ✓ 기타 자본투자의 형태로 발생하는 소득(예외:국공채 이자)
 - d. 자본의 이전에 따른 소득(지분양도, 주식양도 등)
 - e. 부동산 양도소득
 - ✓ 토지사용권 및 부속건물 및 자산의 양도
 - ✓ 주택 또는 입주권의 양도
 - ✓ 토지 또는 공유수면 임차권의 양도
 - ✓ 기타 모든 형태의 부동산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
 - f. 복권당첨 및 시상금 소득(복권, 경품, 카지노, 베팅 등)
 - g. Royalty 등 지적재산권 소득(지적재산권, 산업재산권, 기술이전 등)
 - h. 수증 및 상속에 따른 소득(주식, 지분, 부동산 등)

II. 베트남 세제의 개요

3. Personal Income Tax(소득세)

1) 총칙(General Provision)

- Tax-exemption Income(비과세소득)
 - a. 부부, 부모와 자녀(양부모, 혼인관계 포함), 조부모와 손자녀 그리고 형제,자매간의 부동산(주택 및 주택사업범상의 입주권 포함) 양도에 따른 소득
 - b. 1가구 1주택의 양도에 의한 소득
 - c. 법령에 규정한 정부로부터 받는 토지사용권
 - d. 부부, 부모와 자녀(양부모, 혼인관계 포함), 조부모와 손자녀 그리고 형제,자매간의 부동산(주택 및 주택사업범상의 입주권 포함)의 상속 및 증여에 의한 소득
 - e. 가게나 개인이 직접 종사하여 취득하는 미가공 농수산물, 임산물, 소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
 - f. 은행 등 금융기관 및 생명보험 이자소득
 - g. 해외로부터의 송금되는 외화(국외거주 베트남인으로부터의 송금)
 - h. 연장(야간)근로로 인한 초과 급여소득
 - i. 사회보험국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연금, 매월 지급되는 임의 퇴직연금,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외국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소득(개정)
 - j. 장학금(생활보조금 포함)
 - k. 생명보험, 손해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, 산재보험금,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
 - l. 정부로부터 승인된 비영리 자선단체 및 구호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액

II. 베트남 세제의 개요

3. Personal Income Tax(소득세)

1) 총칙(General Provision)

- 세액감면: 납세자는 자연재해, 사고, 질병 등으로 인하여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함.
- 과세기간
 - ✓ 사업소득, 급여는 1년
 - ✓ 자본투자, 주식을 제외한 자본의 양도, 부동산의 양도, 복권, 상속 및 수증 등은 각 사건이 발생한 때
 - ✓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을 1년 단위로 계산하고자 하는 개인은 세무당국에 연초에 신고해야 함.
 - ✓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매 경우마다 신고해야 함
- 급여소득자의 연말정산 제도가 있음.(환급되도록 되어있으나 실무상으로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차월에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함)
-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와의 조세협약이 상충할 경우 조세협약을 적용함.

II. 베트남 세제의 개요

3. Personal Income Tax(소득세)

2)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방법

- 사업소득의 과세소득 계산
 $\text{과세소득} = \text{사업수익금액} - \text{공제가능 필요경비}$
-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소득계산 특례
지분비율 또는 사전 약정비율에 따라 사업소득을 안분함
-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세무당국에서 정하는 율로 소득금액을 정함(한국의 추계제도와 유사)
- 급여소득, 자본투자 소득은 수입금액과 과세소득이 동일함
- 자본양도, 부동산 양도소득은
 $\text{과세소득} = \text{처분가액} - \text{구입원가} - \text{공제 가능한 처분비용}$
- 복권, 로열티, 상속 및 수증 소득
 $\text{과세소득} = \text{수입금액} - 10,000,000 \text{ VND}$
- 과세표준의 계산
 - ✓ 사업소득, 급여소득자:
 $\text{과세표준} = \text{과세소득} - \text{기본공제(월 9백만동)} - \text{부양가족공제(월 3.6백만동)} - \text{강제보험료 부담분} - \text{퇴직(개인)연금(월 1백만동 한도)} - \text{기부금}$
부양가족공제: 18세 이하의 자녀(장애인, 학생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),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, 부모(혼인관계, 입양 등 포함)
기부금: 법령에 정하는 자선 및 구호단체에 대한 기부금
 - ✓ 자본양도, 부동산 양도소득: $\text{과세표준} = \text{과세소득}$

II. 베트남 세제의 개요

3. Personal Income Tax(소득세)

2)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방법

- 산출세액의 계산

- ✓ 사업소득, 급여소득

구분	과세표준 구간	세율
1	60백만동 이하(월 5백만동)	5%
2	60백만동 초과 120백만동 이하(월 10백만동)	10%
3	120백만동 초과 216백만동 이하(월 18백만동)	15%
4	216백만동 초과 384백만동 이하(월 32백만동)	20%
5	384백만동 초과 624백만동 이하(월 52백만동)	25%
6	624백만동 초과 960백만동 이하(월 80백만동)	30%
7	960백만동 초과	35%

- ✓ 산출세액 = 과세표준 * 세율

II. 베트남 세제의 개요

3. Personal Income Tax(소득세)

2)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방법

- 산출세액의 계산 - 계속
 - ✓ 부동산양도 소득 산출세액은 둘 중 택일
 - 과세표준 * 25%
 - 처분가액 * 2%
 - ✓ 지분양도 소득 산출세액은 둘 중 택일(상장주식일 경우)
 - 과세표준 * 20%(지분증권)
 - 처분가액 * 0.1%
 - ✓ 기타소득

소득의 종류	세율
자본투자	5%
로열티 등 지적재산권	5%
복권 및 상금	10%
상속 및 수증	10%

산출세액 = 과세표준 * 세율

II. 베트남 세제의 개요

3. Personal Income Tax(소득세)

3) 비거주자의 산출세액 계산방법 및 기타이슈

- 사업소득
 - ✓ 상품 유통사업: 과세수입금액 * 1%
 - ✓ 서비스업: 과세수입금액 * 5%
 - ✓ 제조, 건설, 운송 및 기타 사업: 과세 수입금액 * 2%
- 급여소득

비거주자가 베트남에서 일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및 임금 * 20%
- 기타이슈
 - ✓ 급여소득의 원천징수 신고는 매월(20일) 또는 매분기별(30일)에 이루어짐
 - * 원천징수한 소득세 신고금액이 월 5천만동 미만 또는 VAT를 분기별로 신고하는 법인은 소득세 신고를 매 분기별로 함.
 - ✓ 부동산 양도소득, 상속 및 수증소득은 자선신고납부
 - ✓ 급여지급자의 원천징수 의무
 - * 월 2백만동 이상을 지급하는 3개월 미만의 노동계약을 체결하거나 노동계약이 없는 경우 급여를 지급한 법인은 10%의 단일세율로 원천징수 함.
 - ✓ 비거주자는 소득 발생시 신고의무

II. 베트남 세제의 개요

4. Value Added Tax(부가가치세)

1) 총칙(General Provision)

- 납세의무자 : VAT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을 생산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개인 및 조직으로 외국인(개인 및 법인)의 경우 베트남에 법적실체 또는 주소나 거소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음.(용역의 수입 중 예외)
- Non-Taxable Goods & Services (Law on VAT article 5, Decree 209 article 3, Circular 65 article 4)
열거되지 않은 재화 및 용역은 과세대상임.
 - ✓ 미가공 또는 단순 1차가공(건조, 세척, 염장, 냉동 등)농·축·수·임산물
 - ✓ 정부승인 사업자의 동물의 종자번식, 식물의 종묘 생산 및 양생
 - ✓ 관개 및 하수
 - ✓ 소금
 - ✓ 정부소유 국영 주택의 판매
 - ✓ 생명보험, Financial Service(신용공여, 증권거래, 자본투자, Option, SWAP, Futures)
 - ✓ 의료용역(가축 및 동물의료 포함), 시약, 예방, 출산, 재활 및 간병 서비스
 - ✓ 공공서비스(위생, 수도, 하수, 가로등, 가로수 및 화단, 장례서비스 등)
 - ✓ 법률에 정하는 교육 및 직업교육 서비스
 - ✓ 정부소유 라디오 및 TV방송 서비스
 - ✓ 신문, 잡지, 출판(교과서, 직업교육, 법률, 정치, 과학, 정신지체아를 위한 서적 등)
 - ✓ 버스운송
 - ✓ 국방을 위한 무기

II. 베트남 세제의 개요

4. Value Added Tax(부가가치세)

1) 총칙(General Provision)

- Non-Taxable Goods & Services (Law on VAT article 5, Circular 65 article 4)
 - ✓ 기계장치 및 부품(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으로 과학적 연구나 기술개발 목적으로 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)
 - ✓ 재무부에서 승인한 비상환 조건의 원조물품의 수입
 - ✓ 베트남에서 소비되지 않고 재수출되는 수입
 - ✓ 금괴(Bar 또는 Ingot 형태로 가공되지 않은 것)
 - ✓ 수출된 가공되지 않은 천연자원이나 광물
 - ✓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 이하의 개인이 판매하는 재화 및 용역
 - ✓ 수상이 정하는 면세점에서 거래되는 면세 재화

II. 베트남 세제의 개요

4. Value Added Tax(부가가치세)

2)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

- 매출세액 = 과세표준 * 세율
 - ✓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기 전 재화 및 용역의 가격인 공급가액이 VAT 과세표준임
 - ✓ 수입재화의 경우 = 관세의 과세가격 + 관세(if any) + 특별소비세(if any) + **환경보호세(if any)**
- 특별한 경우의 과세표준
 - ✓ **특소세 및 환경보호세가 부과되는 재화나 용역의 경우 특소세 및 환경보호세는 포함하고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가격(개정)**
 - ✓ 할부 또는 연불지급조건의 경우, 과세표준은 할부에 따른 이자를 제외하고 VAT를 제외한 판매금액
 - ✓ 임가공 재화의 경우, 임가공 계약에 따른 VAT를 제외한 임가공 수수료이며 임가공보수, 연료비, 부재료비, 기타 임가공경비로 구분됨
 - ✓ 부동산 거래의 경우
부동산양도가액 - 토지가액(부가가치세법상 공제가 허용되는)
 - ✓ **자가소비(internal consumption)의 경우**
중간재로 사용되었을 경우는 공급으로 보지 않음(예: 실공장, 제직공장) 그러나 최종 소비하였을 경우 공급으로 보고 판매가를 공급가액을 함
 - ✓ 건설공사
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총액으로 과세, 자재를 공급하지 않는 경우 용역부분만 과세
 - ✓ 베트남과 외국에서 동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계약금액 또는 발생비용 기준 안분

II. 베트남 세제의 개요

4. Value Added Tax(부가가치세)

2)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

▪ Tax Rate

- ✓ 0%: 수출되는(non-tariff 지역 포함, spot-export 포함) 재화 및 용역

예외: 기술 또는 지적재산권의 해외 이전, 해외에 제공되는 각종 financial services, 가공하지 않은 천연자원이나 광물, 자동차 및 연료의 비관세지역 판매, 비관세지역에 제공되는 용역(주택, 사무실, 공장, 창고 등의 임대, 호텔, 종업원의 운송, catering service(예외 공장 근로자에 제공되는 catering))

- ✓ 5%:

- 산업용수 및 생활용수(병입 음료 제외)
- 비료, 사료(include 성장촉진제)
- 관개시설, 농경지 개량
- 1차가공 천연고무, 1차가공 송진
- 설탕 및 설탕부산물
- 특수 농기계
- 의료장비 및 의료기기
- 문화, 스포츠, 공연, 전시회, 영화, 영화수입 배급
- 어린이 장난감, 면세대상이 아닌 서적 등

- ✓ 10%: 위 두 가지 세율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및 용역

II. 베트남 세제의 개요

4. Value Added Tax(부가가치세)

2)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

- VAT Calculation Method
 - ✓ Credit Method(매입세액공제법): 산출세액 = 매출세액 - (공제가능)매입세액
 - ✓ Direct Method(직접법): Value Added * VAT rate
- 공제가능 매입세액
 - ✓ 원칙: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유통을 위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
(정상적 감모, 화재 등으로 망실된 재화의 매입세액도 공제가능(단, 보험 등 보상되지 않은 경우))
 - ✓ 안분계산: 공통사용재화의 경우 과세재화의 매출액비율 만큼 공제
 - ✓ 고정자산의 공통사용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(단, 국방무기의 제조, 금융기관, 병원 및 학교 등에서 사용되는 고정자산은 제외)
 - ✓ 기숙사, 식당, 휴게실 등의 종업원복리시설의 고정자산 매입세액 전액 공제
 - ✓ 9인승 이하이며 16억동을 초과하는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불공제
 - ✓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판매 목적, 광고, 선물, 프로모션, 기부 등에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
 - ✓ 매입세액공제는 발생일이 속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제가능(2014년 이후 제한 없이 공제가능)
 - ✓ VAT포함 20 백만동 이상의 거래금액을 경우 은행 이체를 통해 지급되지 않으면 매입세액 불공제
 - ✓ 필요적기재사항 누락된 Invoice 불공제
 - ✓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 매입세액 불공제

II. 베트남 세제의 개요

4. Value Added Tax(부가가치세)

3) 부가가치세 환급 및 기타이슈

- ✓ 직접법에서 매입세액공제법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, 재화나 용역의 구매일이 변경신고 이전이면 Invoice 발행일이 변경신고일 이후라고 하여도 매입세액 불공제
- 부가가치세 환급제도
 - ✓ 매입세액공제법을 적용할 경우에만 환급 가능
 - ✓ 환급신청은 별도로 해야함
 - ✓ 수출기업의 경우 환급금액이 매월 또는 매 3개월 3억동을 초과하는 경우 매월 또는 매3개월 환급 가능함. 매월 환급신청을 하는 수출기업의 경우 총 공제가능한 매입세액 중 수출비율에 따라 환급함
 - ✓ 일반기업의 경우 매월 또는 매분기말 환급가능금액이 12개월이상 존재할 경우 1년 단위로 환급
 - ✓ 신설법인의 경우 건설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 투입된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이 3억동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 가능 또는 매년 환급 가능함.
 - ✓ 부가가치세 환급의 경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세무조사가 병행(방문조사 또는 서면조사) 되므로 일시적으로 공제가능 매입세액이 발생한다면 환급보다는 차월 이후의 매입세액 공제를 고려하는 편임
- 기타이슈
 - ✓ 실무적으로 환급신청시에 환급액의 몇 %로 under table money를 요구 받는 경우가 많으나 환급기간(45일)을 단축하는 의미 또는 교통비 정도의 금액이외에 지급할 필요가 없음
 - ✓ 미상환되는 ODA 자금으로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하여 구입하는 재화와 용역의 매입세액은 환급 가능
 - ✓ 수출대금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동 금액의 비율 만큼 VAT환급 불가

정일회계법인 베트남 및 강사 소개

■ 정일회계법인 베트남 사업본부는

The Best Accounting Corporation to satisfy clients

- ◆ 정일회계법인은 고객최우선주의(Client First)의 이념으로 고객의 가치창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국내 중견회계법인으로 베트남 현지 회계법인인 **Vietland Co., Ltd.**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◆ 정일회계법인 베트남본부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 CPA 2명, 베트남 CPA 3명, Audit Assistant 및 Accountant 25명으로 구성되어 client의 needs에 부응하는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또한, 2명의 KICPA는 VACPA(베트남 공인회계사) 자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베트남의 회계제도 및 세무제도에 전문화되어 있습니다.
- ◆ 특히, 정일회계법인 베트남본부는 현지 투자법인의 인수, 합병에 관한 업무를 여러 건 수행한 전문가들이 이 분야에 High quality Service 를 제공하고 있으며, 베트남 세법에 정통한 다수의 **베트남 CPA가 해외투자법인의 어려운 세무상의 문제 해결을**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

■ 강 형 중(姜 亨 中)

- ◆ 한국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금융자산관리사
- ◆ 베트남 공인회계사
- ◆ 현, Vietland Audit & Consulting Co., Ltd.(정일회계법인 베트남파트너 법인) 이사
- ◆ 현, Jung-II Financial Advisory Co., Ltd. 대표
- ◆ 현, 호치민 상공인연합회 감사
- ◆ 현, 호치민 한인회 감사